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신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4.

발 의 자 : 우신구 · 권명호 · 김예지
박대수 · 이채익 · 이종배
한기호 · 임이자 · 이현승
최형두 · 임병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학교 · 직장 등의 장만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통하여, ‘자원봉사 마일리지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 이를 통해, 자원봉사자들은 적립된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해 국공립시설 및 제휴 민간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.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‘자원봉사 마일리지’ 제도의 운영 유무 및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

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 등).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③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필요시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.

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시간을 관리하고, 자원봉사자가 봉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(생 략)	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봉사자의 봉사 시간 관리 및 활 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 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필요시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.</u>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시 간을 관리하고, 자원봉사자가 봉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